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5년 12 월 1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(주)타임폴리오투자자문
(영문명) TIMEFOLIO Investment Management Co.,Ltd
(홈페이지) <http://www.timefolio.co.kr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-10 SK증권빌딩 19층
(전 화) 02-533-8940

대 표 이 사 : 황성환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이사
(성 명) 김환웅 (전 화) 535-8948

작 성 자 : (직 책) 팀장
(성 명) 김수지 (전 화) 537-894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5-1-1호)

유상증자결정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. 신주의 종류와 수 | 보통주 (주) | 263,744 |
| | 우선주 (주) | 0 |
| 2. 1주당 액면가액 (원) | | 5,000 |
| 3. 증자전 발행주식총수(주) | 보통주 (주) | 803,300 |
| | 우선주 (주) | 0 |
| 4. 자금조달의 목적 | 시설자금 (원) | 0 |
| | 운영자금 (원) | 8,560,339,008 |
| |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(원) | 0 |
| | 기타자금 (원) | 0 |
| 5. 증자방식 | 주주배정후 실권주 제3자배정 | |

【주주배정증자의 경우】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
| 6. 신주 발행가액 | 보통주 (원) | 32,457 |
| | 우선주 (원) | 0 |
| 7. 이론권리락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(%) | 『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』에 의한 주식평가액/ 할인할증 없음 | |
| 8. 신주배정기준일 | 2015년 11월 30일 | |
| 9.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(주) | 0.328326 | |
| 10.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(%) | 0 | |
| 11. 청약예정일 | 우리사주조합 | |
| | 구주주 | |
| 12. 납입일 | 2015년 12월 3일 | |
| 13. 실권주 처리계획 | 2015년 12월 3일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제3자배정 | |
| 14. 신주의 배당기산일 | 2015년 4월 1일 | |
| 15. 신주권교부예정일 | 2015년 12월 3일 | |
| 16. 신주의 상장예정일 | | |
| 17. 대표주관회사(직접공모가 아닌 경우) | | |
| 18. 신주인수권양도여부 | | |
| -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| | |
| -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 | | |
| 19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 | 2015년 11월 30일 | |
| - 사외이사 참석여부 | 참석(명) | 0명 |
| | 불참(명) | 0명 |
| - 감사(감사위원)참석 여부 | 참석 | |
| 20.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| 면제 (50인 이하) | |
| 21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| | |
| 22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| 실권주는 임.직원이 취득 | |

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한다.
- 주2) “증자전 발행주식총수”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한다.
- 주3) “증자방식”에는 주주배정증자, 주주우선공모증자,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한다.
- 주4) “신주발행가액”은 신고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가액을,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방법 및 확정예정일 등을 기재한다.
- 주5) “이론권리락주가에 대한 할인율”, “조정주가에 대한 할인율”, “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”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기재하고,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에서 정한 할증율을 기재한다.
- 주6) “1주당 신주배정주식수”는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.
- 주7)【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】의 “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”에는 최대주주, 그 특수관계인, 주요주주, 계열회사, 기타 등으로 기재하며,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의한 구체적인 관계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다.
(예시)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, 최대주주인 (주)ABC의 임원
- 주8)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, 신주권교부예정일, 단주처리방법,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,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9)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10) “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”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“대규모내부거래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억원이상)” 해당여부를 기재한다.
- 주11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

